
2024년도 양구군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 원)	
계			29건	계 29 시정 20 주의 9	계 회수 추징 감액 환급	716,689 112,206 65,480 537,955 1,048	계 32 경징계 4 훈 계 28
1	㉠	'20~'24	인사운영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3,145	훈 계 7
2	㉠	'20~'23	교육훈련 운영 소홀	시정 (주의)	-	-	훈 계 3
3	㉡	'21~'23	징계의결 요구 업무 부적정	주의	-	-	경징계 2 훈 계 3
4	㉢	'21~'23	양구●●●● 소장유물관리 소홀	시정 (주의통보)	-	-	훈 계 1
5	㉣	'21~'23	자동차관련 업무 소홀	시정 (주의)	-	-	-
6	㉤	'20~'23	저소득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지도감독 소홀	시정 (주의)	회수	11,000	
7	㉥,㉦	'20~'23	아동복지시설 관리 감독 소홀	시정 (주의)	회수	19,650	
8	㉥	'20~'23	장애인복지기금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	시정 (주의)	-	-	훈 계 3
9	㉥	'21~'23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감독 소홀	시정 (주의)	회수	23,313	
10	㉥	'20~'23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시정 (주의)	회수 환급	5,824 1,048	
11	㉢	'20~'24	■■■■ 관리·운영 부적정	주의 (개선)	-	-	훈 계 1
12	㉧	'20~'24	가족수당 지급 업무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33,930	-
13	㉨,㉩	'20~'24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 부적정	시정 (주의)	추징	9,178	훈 계 2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 원)	
14	㉔	'20~'23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시정 (주의)	추징	18,578	-
15	㉔ 등 7개부서	'20~'24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	-
16	㉔ 등 11개부서	'20~'24	공사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계약 업무 소홀	주의	-	-	-
17	㉔	'22	■■■■■ 참가 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훈 계 1
18	㉔	'22	★★★★ 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
19	㉑	'20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조성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
20	㉔	'20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정성 확보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	-
21	㉔	'21~'23	양구군★★★★ 개최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	-	-
22	㉑	'22	☞☞☞☞ 상품개발 및소비 시장 다변화 사업 추진부적 정	주의	-	-	-
23	㉑	'23	조림·숲가꾸기사업 산업안전 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5,966	-
24	㉑	'20~'23	■■ ■■■■■ ■■■■■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	-	경징계 2 훈 계 1
25	㉕	'20~'2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관로 정비사업 감독 소홀	시정 (주의)	감액	462,955	-
26	㉕	'20~'23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부적정	시정 (주의)	추징	37,724	훈 계 3
27	㉑	'20~'23	■■■■■ ■■■■■ 건립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3,562	훈 계 1
28	㉔,㉔	'20~'23	건축공사 감독 소홀	시정 (주의)	감액	75,000	-
29	㉔	'20~'23	■■■■■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5,816	훈 계 2

[일련번호: 01]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인사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양구군	F(전 ㉠)	-----	㉠
② 양구군	L(전 ㉠)	-----	㉠
③ 양구군	D(전 ㉠)	-----	㉠
④ 양구군	㉠	-----	㉠
⑤ 양구군	M(전 ㉠)	-----	㉠
⑥ 양구군	C(전 ㉠)	-----	㉠
⑦ 양구군	㉠	-----	㉠

내 용

양구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보직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㉔--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및 직위특성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하고,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수도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¹⁾를 수도시설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1) 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의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수도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0000. 0. 0. 0.부터 0000. 0. 00. 까지 [표 1]과 같이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시설 근무경력 및 관련 학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 ●●●와 ----- ▲▲▲을 ㉠ ----으로 임용하는 등 보직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 임용 현황

부 서	직 위	임용사항				비고
		임용일	직렬	직급	성명	
㉠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 자격 미충족
㉠						· 자격 미충족
㉠						· 자격 충족여부 검토없이 임용
㉠						· 자격 충족여부 검토없이 임용
㉠						· 자격 충족여부 검토없이 임용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의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의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10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 자

더욱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으로 0000년 강원도 종합 감사²⁾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 임명시 이를 시정하지 않아 0000년 00월 00일 -----으로부터 과태료(30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아울러 0000. 0. 00. ~ 0000. 0. 00. ----- ----까지 0차례 ㉠--을 임명하면서 사전에 수도시설관리자로서의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 ■■■■의 자격 충족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나. 전보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맞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용권자는 직제 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표 2]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경우

- | |
|---|
|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 |

2) -----

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군 지역의 직위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공무원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따라서 양구군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발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양구군의 전보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0000. 0. 00. ~ 0000. 0. 00.까지 전보발령 인원 677명 중 442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를 근거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조치를 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조치 인원은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 10 이내로 한정하여 사전에 양구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인원 199명에 대하여 양구군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 발령하였으며, 전체 전보인원 대비 필수보직기간내 전보 비율은 65.28%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3]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인원

(단위: 명)

연도	전보인원(a)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15호				비율(b/a)	비고
		계(b)	사전심의	미심의	사후심의		
계	677	442	243	199	0	65.28%	
0000년	50	42	35	7	-	84%	
0001년	242	131	54	77	-	54.13%	
0002년	220	144	52	92	-	65.45%	
0003년	165	125	102	23	-	75.75%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직렬불부합 임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5조·제16조·제20조 및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양구군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및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정」 별표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대로 기구별 담당급 이상을 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0000. 0. 00. ----- ---- 양구군 기구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담당급 이상 직위 7명이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하였다.

[표 4] 담당급 이상 직렬불부합 임용 현황

소속	직위	정원		임용사항			
		직렬	직급	임용일	직렬	직급	성명
합계	7개 직위						
㉠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							
㉢							
㉣							
㉤							
㉥							
㉦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구군(㉔)에서 수립한 정기평정계획(0000년~0003년)에 따르면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감점기준³⁾에 있는 징계 등 감점요인은 만점에서 감점처분 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표 5]와 같이 000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훈계 처분으로 감점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점하지 아니하는 등 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3) 감점기준

- 준법성 : 정직 1회당 3점, 감봉 2.4점, 견책 1.6점, 불문경고 1점, 훈계·주의 0.8점
- 협조성 : 명령위반(당직명령, 상급자 지시사항 등 등) 1.0점, 각종행사·교육·조회 등 불참 0.5점
- 책임성 : 무단결근 1점, 지각 0.6점, 비상근무, 비상소집 불참 0.6점, 5부제 등 제규정 위반 1.0점, 일간지, 방송에 보도된 사회의 지탄 또는 물의를 일으킨자 0.6점

[표 5]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감점 현황

연도별	소속	직급	성명	처분		실제감점	정상감점	비고
				일자	양정			
0000년 상반기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훈계	-	0.8	감점미실시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가산점 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고,

또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르면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 4)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 5)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0000. 0. 00. [표 6]과 같이 실적 가점부여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면서 「양구군 인사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당해년도 근무평정 시부터 바로 적용하는 등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6] 가점부여 및 배점기준 변경 내역

구분	~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부터 적용	
	기준	배점	기준	배점
	총 계	4.5점	총합계	5점
자격증 가산	직무관련 자격증	0.75점	직무관련 자격증	0.5점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 폐지
실적 가산	합계	3.0점	합계	4.5점
	훈장포장	1.0점	훈장포장	1.0점
	제안채택	1.0점	제안채택	1.0점
	자원봉사실적	0.5점	업무추진실적 우수자	0.5점
	선행공무원	0.5점	적극행정우수공무원	0.5점
	-	-	격무부서 근무자	1.0점
	-	-	다자녀 출산공무원	0.5점
특수지 근무경력	합계	3.0점	폐지	폐지
	특·갑지	월 0.025점		
	을지	월 0.018점		
	병지	월 0.013점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청원경찰 등의 목적 외 배치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

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경비
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
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며,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
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
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구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
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0000. 0. 00. ----- ---- 양구군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담당업무를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 등 6개 부서 00명이 경비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청원경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7] 청원경찰의 경비 외 업무수행 현황

연번	부서	배치	성명	경비 외 수행업무
합계	6개 부서		00명	
1	㉠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2	㉡			
3	㉢			
4				
5	㉣			

연번	부서	배치	성명	경비 외 수행업무
6				
7				
8				
9	Ⓜ			
10				
11				
12				
13				
14				
15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정직 · 직위해제 처분자 등 보수 및 수당 지급 부적정

가. 정직 · 직위해제 처분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양구군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법⁶⁾」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제1호다목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르면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범위에서 반영하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직, 직위해제,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본인의 연가 가능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고, 정직 후 사용한 연가는 결근처리를 해야한다.

그런데 양구군(㉔ 등)에서는 [표 8]과 같이 정직 및 직위해제자 5명에 대하여 복직이후에 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채 연가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공제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총1,675천 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8] 정직 처분자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단위 : 일, 천 원)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처분기간	복직일	복직후 사용한 연가일수	연가 보상일	환수액(예정)		
								과지급 급여	연가 보상비	소계
합 계								1,044	1,675	2,719
㉔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3시간	5	-	370	370
㉕						-	11	-	505	505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처분기간	복직일	복직후 사용한 연가일수	연가 보상일	환수액(예정)		
								과지급 급여	연가 보상비	소계
㉔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2일	2	295	220	515
㉕						-	5	-	343	343
㉖						10일 5시간	4	749	237	986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정직 · 직위해제 처분자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등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하면서 정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정직 ·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출근 근무일수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9]와 같이 같이 정직 및 직위해제자 4명에 대하여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9] 정직·직위해제 처분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일, 천 원)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처분기간 (휴직기간)	복직일	환수액(예정)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액
합 계						426
㉠	개인정보 및 개인특정 가능 정보 포함 (비공개)					109
㉡						107
㉢						99
㉣						111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인사규칙 제·개정 업무 소홀

양구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을 매년 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매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계 법령 시행일 이전에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양구군 인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확인한 결과 0000. 00. 00. 개정을 마지막으로 0000. 0. 00.까지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상위 법령의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양구군 인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10] 상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미반영 현황

개정일	조항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20.9.20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22.1.1.
	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	▶ 특수지 근무, 특정 직위 근무 및 특정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대상 경력과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2.1.1.
	제25조의2(실 적 가산점)	▶ 제2항 삭제	'22.1.1.
	제25조의3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 본조신설	'22.1.1.
'22.11.7.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안)	제8조 (응시연령)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4.1.1.
	별표4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24.1.1. '23.1.1.
	별표5의2 (경채 자격증)	▶ '전산직렬'에 자격증 추가	'24.1.1.
	별표7의4 (가산대상 자격증)	▶ '전산직렬' 신설	'24.1.1.
'23.6.13.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안)	제12조 (시험위원)	▶ 해당시험실사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	'23.6.13.
	제 14 조의2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의 점검)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신설	'23.6.13.
	제6조의2 (응시수수료)	▶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23.6.13.
'23.8.1.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안)	별표 5의2 (경채 자격증)	▶ 3년 범위 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 삭제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23.8.1.
	제6조의2 (응시수수료)	▶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24.1.1.
	별표 7의4 (가산대상 자격증)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25.1.1.
'24.1.15.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24.1.15.
	별지 제3호 (응시원서)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24.1.15.

개정일	조항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안)	별표 5의3 (응시요건 등)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졸업자등)'로 수정	'24.1.15.
	별표 5의3 (응시요건 등)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24.1.15.
	별표 5의3 (응시요건 등)	▶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24.1.15.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양구군 ㉞(전 ㉜) ----- ㉞는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미충족자를 ㉞--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타부서로 전보 임용하는 등 -----으로서 직무상 책임을 소홀히 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㉞(전 ㉜) ----- ㉞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미충족자를 ㉞--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타부서로 전보 임용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의 실적 가점부여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면서 「양구군 인사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당해년도 근무평정 시부터 바로 적용하는 등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계 법령 시행일 이전에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양구군 인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으로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㉔(전 ㉑) ----- ㉑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충족여부 입증없이 ㉑--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타부서로 전보 임용하였고,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정」과 정한 바와 달리 담당급 직렬을 불부합하게 임용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의 실적 가점부여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면서 「양구군 인사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당해년도 근무평정 시부터 바로 적용하는 등 등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인사 업무의 전반에 걸쳐 -----으로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㉑ ----- ㉑은 0000. 0. 00.부터 0000. 0. 00. -----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충족여부 입증없이 ㉑--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타부서로 전보 임용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계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양구군 인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으로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㉓(전 ㉑) ----- ㉒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로 근무하면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미충족자를 ㉒--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타부서로 전보 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㉑(전 ㉑) ----- ㉒는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로 근무하면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미충족자를 ㉒--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보 임용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의 실적 가점부여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면서 「양구군 인사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당해년도 근무평정 시부터 바로 적용하는 등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계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양구군 인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로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 ----- ㉡은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
-----로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없이 ㉢--으로 임명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보 임용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계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양구군 인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로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양구군 인사규칙」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직·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과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급여,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총 3,145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직 증원 및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소속 직원의 직급·직종에 상응하는 직위를 적정히 부여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 전보 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및 감점 기준에 맞게 철저히 적용하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출근 근무일수가 없거나 15일 미만인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④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육훈련 운영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양구군	㉠(전 ㉠)	-----	다
② 양구군	㉠	-----	라
③ 양구군	㉠	-----	아

내 용

양구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등록(입력 및 승인) 및 정기 점검·확인 등을 통해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

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부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오류 및 부정⁷⁾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시험 및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 포함하거나 승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양구군(㉠)은 붙임과 같이 22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실적 382시간을 중복 입력하였다.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_4.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_ 다. 교육훈련 실적관리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가능(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불인정)

그 결과 [표]와 같이 5명에 대하여 승진심사일 기준 상시학습 필요시간에서 중복 등록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충족하여 당해 승진심의회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승진임용되었고, 교육훈련 실적이 충족되는 다른 적격자의 승진임용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상시학습 미충족자의 승진의결 현황

의결일자	승진인원	심의 대상자(당시)					심의 결과	상시 학습 충족 여부
		소속	직위(급)	성명	현직급	순위		
합계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1위	승진	미충족 ⁸⁾ (25시간 부족)
						2위	승진	미충족 (129시간 부족)
						2위	승진	미충족 (2시간 부족)
						1위	승진	미충족 ⁹⁾ (14시간 부족)
						2위	승진	미충족 ¹⁰⁾ (14시간 부족)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양구군(㉠)은 개인별 상시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된 실적은 삭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2020. 10. 1.부터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적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한편 ㉡ ----- ㉢과 ㉣ ----- ○○○은 0000. 00. 00. 0000년도 제0회 양구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된 자로서 0000. 0월 중 승진임용 예정으

8) 해당직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을 위하여, 승진의결 직전 직급에서의 입력되지 않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를 감사기간동안 추가 제출(51시간 추가 제출)
 9) 해당직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을 위하여, 승진의결 직전 직급에서의 입력되지 않은 교육훈련실적 증빙 자료를 감사기간동안 추가 제출(16시간 추가 제출)
 10) 해당직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을 위하여, 승진의결 직전 직급에서의 입력되지 않은 교육훈련실적 증빙 자료를 감사기간동안 추가 제출(15시간 추가 제출)

로 되어 있어,

양구군(㉠)에서는 교육훈련 실적 미충족자의 승진의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11)(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교육훈련 실적 충족자가 승진의결 및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양구군 ㉠(전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상시학습 실적업무 ----- 으로 근무하면서,

상시학습 실적에 대한 중복·오류·부정 입력사항 점검 등을 지시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상시학습 실적 업무 처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중복된 실적이 입력된 직원이 승진임용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상시학습 실적업무 ----- 으로 근무하면서,

상시학습 실적에 대한 중복·오류·부정 입력 사항 점검 등을 지시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상시학습 실적 업무 처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중복된 실적이 입력된 직원이 승진의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 상시학습 실적업무 ----- 로 근무하면서,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부서직원의 상시학습 중복·오류·부정 입력 사항 등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인의 상시학습 실적이 ㉠에서 중복으로 입력되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중복된 상시학습 실적시간이 인정되어 0000. 00. 00. 승진의결 되는 등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실적에 대하여 중복·오류·부정 입력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력 사항을 바르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예정자의 상시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시학습 실적 미충족자가 승진의결되지 않도록 양구군 인사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3]

강원특별자치도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징계의결 요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징계대상자 ① 양구군 ㉑(전 ㉒) ----- ㉑

② 양구군 ㉑(전 ㉒) ----- ㉒

※ 훈계대상자

① 양구군 ㉑(전 ㉒) ----- ㉒

② 양구군 ㉑(전 ㉒) ----- ㉒

③ 양구군 ㉑(전 ㉒) ----- ㉒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양구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소청 규정」 제2조 및 제16조의3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 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등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¹²⁾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다만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¹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표 1] 수사기관 통보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u>내부종결 처리</u> . 단,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12)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13)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된 자에 대해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예산 및 기금, 보조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따라서 양구군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양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등 징계 사유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표 2]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양구군 소속 공무원 2명의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타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양구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해당 공무원이 형의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장기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비위 행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등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수사기관의 범죄처분 결과 통보 내역

성명	통보 기관	범죄수사결과 통보일	결정 내용	통보 기관	피의(고소 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일	결정 내용	죄명	당연 퇴직일 (형 확정)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비공개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00.0.00. *집행유예 0년 (징역0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비공개							업무상횡령, 사기,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등 위작, 시문서 위조 등	00.0.0. *징역 0년 0월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양구군 ㉠(전 ㉡) -----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① 0000. 0. 0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양구군 소속직원인 ○○○(-----)에
대한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 문서를 통보 받고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에 대
한 징계의결 요구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으로 0000. 0. 00.까지 근무하면서 ○○○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 요구를 장기간 지연시켰으며, 후임
------(----- ㉣)에게도 ○○○에 대한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필요성 및 주요 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은 0000. 0. 0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징역 0월,
집행유예 0년)이 확정되면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②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0000. 00. 0. ◇◇◇(-----)에 대한 수사개시 통
보 및 0000. 00. 00. 범죄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0000. 00. 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에 대한 “공무원 등 고소
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 문서를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
◇◇(-----)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하지 않았으며,

-----으로 0000. 0. 00.까지 근무하면서 ◇◇◇에 대한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 요구를 장기간 지연시켰으며, 후임
------(----- ㉣)에게도 ◇◇◇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필요성 및 재판 진
행사항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은 0000. 0. 00. 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0000. 0. 0. 형(징역 0년 0월)이 확정되면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더욱이 ----- ㉠은 0000년 0월 0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특정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및 기금 횡령 등 ◇◇◇에 대한 징계사유를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0000. 0. 00. 경찰서에 ◇◇◇에 대한 고발 의뢰 이후 0000. 0. 00. 타부서로 전보 임용될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 ㉠은 지방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기 위한 징계의결 요구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 -----부서 -----으로서, 양구군 소속 비위공무원이 징계처분 없이 당연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경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전 ㉢) ----- ㉣은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로 근무하면서,

① 0000. 0. 0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에 대한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 문서를 통보 받고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로 0000. 00. 00.까지 근무하면서 ○○○의 재판에 대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 요구를 장기간 지연시켰으며, 후임 담당자(----- ㉤)에게도 ○○○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필요성 및 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은 0000. 0. 0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징역 0월, 집행유예 0년)이 확정(0000. 0. 00. 송달)되면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②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0000. 00. 0. ◇◇◇(-----)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및 0000. 00. 00. 범죄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0000. 00. 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양구군 소속직원인 ◇◇◇(-----)에 대한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 문서를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 재판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 요구를 장기간 지연시켰으며,

그 결과 ◇◇◇은 0000. 0. 00. 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0000. 0. 0. 형(징역 0년 0월)이 확정되면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따라서 ----- ㉠은 지방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기 위한 징계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 부서 -----로서, 양구군 소속 비위공무원이 징계처분 없이 당연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징계의결 요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경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전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0000. 00. 0. ◇◇◇(-----)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및 0000. 00. 00. 범죄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양구군 소속 ○○○(-----)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0000. 0.00.)” 및 ◇◇◇(-----)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0000. 00. 0.)” 가 ㉔(전 ㉕)에 통보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 및 -----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며,

지방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기 위한 징계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부서 -----로서, 양구군 소속 비위공무원이 징계처분 없이 당연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직무상 책임을 소홀히 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㉖(전 ㉗) ----- ㉘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㉙ -----으로 근무하면서,

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양구군 소속 ○○○(-----)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0000. 0.00.)’ 및 ◇◇◇(-----)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0000. 00. 0.)’ 가 ㉔(전 ㉕)에 통보된 이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 및 ◇◇◇의 재판진행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채 징계의결 요구를 지시하지 못하였으며,

◇◇◇ 고발사건의 경우 0000. 0. 0.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0000. 00. 00.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과금의결 요구를 하였으나,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이 아닌자를 징계 등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반려 통보 받는 등 징계의결 요구업무를 소홀히 관리·감독 하였으며,

○○○ 피의사건의 경우 0000. 0. 0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징역 0월, 집행유예 0년)이 확정되면서 양구군 소속 비위공무원이 징계처분 없이 당연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징계의결 요구업무를 -----로서 직무상 책

임 소홀히 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전 ㉡) ----- ㉢는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양구군 소속 ○○○(-----)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0000. 0.00.)' 및 ◇◇◇(-----)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0000. 00. 0.)' 가 ㉡(전 ㉢)에 통보된 이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 및 ◇◇◇의 재판진행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 요구를 계속하여 방치하였으며,

◇◇◇ 고발사건의 경우 0000. 0. 0.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0000. 00. 00.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과금 의결 요구를 하였으나,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이 아닌자를 징계 등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반려 통보 받는 등 징계의결 요구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결 요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4]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통보

제 목 양구●●●● 소장유물관리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관 련 자 양구군 ㉔ ----- ㉔

내 용

양구●●●●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를 [표 1]과 같이 지속 수집하고 유물에 대한 관리·보존·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유물 구입 및 기부 내역

(단위 : 점, 백만 원)

구분	합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이전	
소장유물 합계	2,608	165	1,119	132	1,192	
기 증	1,809	50	1,034	43	682	
구 입	유물수	799	115	85	89	510
	금 액	785	188	6	94	497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유물 취득 관리 대장 작성 소홀

「박물관진흥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르면 박물관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표

2]와 같이 취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취득 관리대장 서식¹⁴⁾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취득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또한 유물출납원은 [표 3]과 같이 효율적인 유물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를 변경·활용할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유물관리대장 및 변경활용 관리대장 서식

- 목록 및 변경활용 관리대장 ¹⁵⁾ -						
연번	명칭	수량	관내 소장/전시위치		활용내용	참고사항
			일시	위치		

따라서 양구군(●●●●)은 ●●●●관련 유물(자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관리대장과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유물에 대하여 전시 등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활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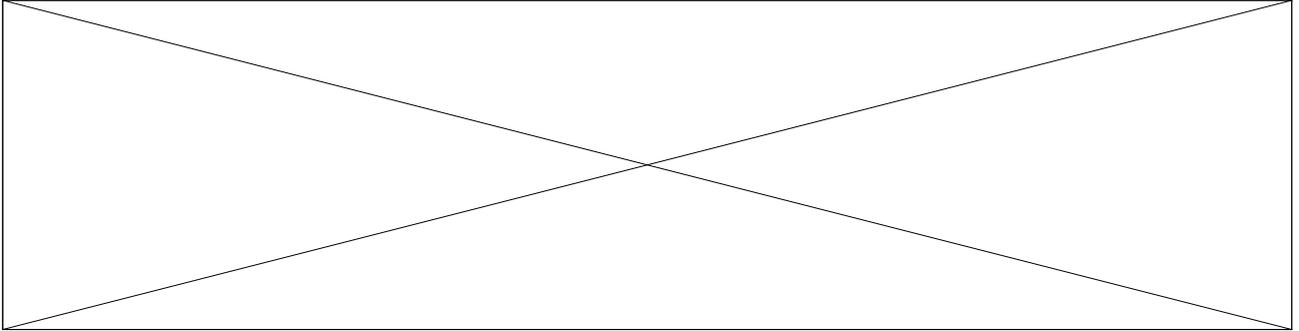
그런데 양구군(●●●●)은 0000. 0. 00. ●●●● 개관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집한 2,608점의 유물 일체에 대하여 박물관진흥법에서 정한 취득 관리대장과 변경활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표 4]와 같이 자체 관리 대장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취득·관리에 관한 필수 정보를 누락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한 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소장 유물에 대한 취득 및 활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양구●●●● 소장유물 일부 목록



※ 양구군 제출자료 발체 재구성

2. 소장유물 현황 점검 및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리대상 물품 중 관리대상 배제물품은 도서 및 박물관 보존물품 등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방법을 정하지 않은 박물관자료 등은 그 특성을 참작하여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양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시설물관리공무원은 소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구군 문화시설 정기점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소장품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매 분기별 각 문화시설의 소장품 목록을 감사업무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는 2014. 8. 25.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¹⁶⁾(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소장 유물의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재물조사 결과가 박물관 내부보고로 종결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소장유물이 분실·도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소장유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양구군(●●●●)은 ●●●●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장유물의 분실 및 망실,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례, 운영규정 및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 소장 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분기별로 감사업무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문화시설 관리자가 매월 2회 소장품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무상 감독자인 © -----에게만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소장유물의 분실·도난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장품의 보험 미가입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유물 등이 전시·보관되어 있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양구군 © -----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양구●●●● -----으로 근무하면서 ●●●● 소장유물 현황 점검 및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16)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4-292호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이 소장유물에 대한 취득관리대장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정한 서식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의 소장유물에 대한 대장상의 수치 조사가 아닌 실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소장유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 결과가 ●●●● 내부 보고로 종결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고, 분실·도난되거나 훼손된 유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①

내 용

양구군(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이하 “자동차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소홀

「여객자동차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및 「화물자동차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련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 실시하거나, 중대한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양구군(①)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벽

지 노선 운행 손실의 보전,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시설의 정비 및 확충, 경영개선이나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감사일 현재까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7,300천 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였다.

2.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 소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법 제72조 제2항17)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법 제73조제1항제3호18)에 따른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행위 단속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준수 여부,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와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24개 자동차관리사업자19)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래 [표 1]과 같이 분기마다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7)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8)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19) 양구군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

구분	합계	정비업			매매업
		소계	종합	전문	
자동차관리사업자	24	22	2	20	2

[표 1]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지도·점검 실시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	1	2	3	4	1	2	3	4	1	2	3	4
실시여부 (○, ×)	× (코로나)	○	○	○	×	×	○	×	○	×	○	×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 2020년은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도·점검 보류 요청에 따라 미 실시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최초 등록일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지세법」 제8조(납부) 및 제10조(소인)에 따르면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이륜자동차 신고를 위해 제출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신고처리 즉시 전자적 소인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해당 수입인지의 부정적 재사용이나 환매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2020. 1. 1.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표 2]와 같이 첨부된 전자수입인지(506회, 1,518천 원)를 감사일 현재까지 소인처리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이륜차 사용 신고 처리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합계	2021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1. ~ 2024.2.28.
신고수	506	97	144	146	110	9
신고액	1,518	291	432	438	330	27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고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시 청구한 정부수입인지에 대해 즉시 소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6]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저소득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등 탈 빈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환수처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시장·군수는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고, 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에는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하거나 급여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액 변경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압류의 절차로 환수하여야 하고, 생계급여를 환수한 시군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생계급여 부정수급²⁰⁾ 또는 과오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수급자 ○○○외 9명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인지하였으나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1] 생계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진행 현황

(단위: 원)

지원대상자			과오지급 현황			과오지급사유	조치사항
성명	생년월일	환수결정일자	부정수급액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계			15,209,580	4,208,740	11,000,840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623,370	561,040	62,330	부정수급	없음
			1,750,350	787,590	962,760		
			8,296,170	-	8,296,170		
			620,870	184,170	436,700		
			877,800	731,500	146,300		
			483,550	87,900	395,650		
			623,370	356,200	267,170		
			549,000	364,000	185,000		
			1,200,760	1,044,160	156,600		
			184,340	92,180	92,160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자활사업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자활근로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국고보

20) 부정수급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조금으로 자활근로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업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중 사업비 지출한도를 시장진입형은 사업비를 30% 이하, 인턴·도우미형은 사업비를 10% 이하, 사회서비스형은 20% 이하, 근로유지형은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등 요구 조치해야 하고, 지도·감독 결과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법인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2]와 같이 ★★★★★가 자활근로예산으로 2023년도에 0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인 ●●●●●●●을 운영함에 있어 80:20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이 70:30의 비율로 집행하여 사업비를 10% 초과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양구군은 자활근로예산의 사업비 비율을 초과 집행한 부분에 대해 이를 시정 요구하지 않는 등 적정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 ----- 운영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단 현호아			자활근로예산 집행액			부적정 집행비율		적정 집행비율		비고
년도	사업단	개시일	총계	인건비	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2023	/		67,242	47,194	20,048	70	30	80	20	

3.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 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군수이며,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장, 직업안정기관,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대표자이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등을 협의하고,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관련 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은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법이 2007. 7. 1.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기능보강공사 업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 5. 28. 시행)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예규 제277호 2024. 2. 14. 일부개정) 제5장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의 용역·물품기타에 대하여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납품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구군(☎)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 보조사업이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다.

①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3]과 같이 추진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업체의 3인 견적에 의

해 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특히, 사업 공정상 분리발주 필요성이 없으며 공사 시기도 동일한 “★★★ 기능보강”(◆◆◆◆◆) 사업비 22,601천 원을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²¹⁾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하한율²²⁾ 적용 시 최대 2,77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표 3] ★★★★★★ 민간자본보조사업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계약명 (보조사업자)	계약총액	건별 계약금액	업체명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방법	정당계약	최대절감 기능금액
		22,601							2,770
2023	★★★★★★	22,601	15,679	/	-	/	3인 견적 수의계약 및 지정정보 처리장치 미이용	2인 이상 견적 입찰계약 및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2,770
			6,922	/	-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정수급한 생계급여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정수급액 11,000,840원을 징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1)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22)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고 ★★★★★가 사업단별 보조금 집행비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아동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

내 용

양구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정서적·문화적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예·결산 미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 제45조 및 「사회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양구군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표 1]과 같이 시설 예·결산서를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아동복지시설 예·결산서 제출 및 공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시설명 (설치일)	시설 예산서			시설 결산서			비고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아동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미흡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41조의6 및 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²³⁾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

23)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시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 사용 용도를 준수하고 명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2]와 같이 후원금 사용 결과를 군 및 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아동복지시설 후원금 사용결과 미공고 현황

연도	시설명 (설치일)	후원금 수입			연간사용액(원)	비고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2020		○	○	○	38,975,366	
2021		○	○	×	33,975,366	
2022		○	○	×	36,476,437	
2020		-	-	-	후원금이 없음	
2021		○	×	○	2,000,000	
2022		○	○	○	2,800,000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아동복지시설 후원금집행 관리 미흡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 제29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²⁴⁾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²⁵⁾), 자산취득비(토지, 건물 등 구입),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3]과 같이 '◆◆◆◆◆'에서 비지정후원금을 기타후생경비의 명칭으로 매월 정기적인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이처럼 매월 지급된 기타후생경비는 월급의 보충적 성격으로 직책보조비인 업무추진비에 해당되어 집행할 수 없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타후생경비는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 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서비스(건강진단비, 치료비 등)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건, 원)

해당년도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계		19,650,000		
2020	2020. 00. 00. 외 10건 (매월)	2,470,000	기타후생경비 (000외 2명)	업무추진비 (집행불가)
2021	2021. 00. 00. 외 11건 (매월)	4,980,000	"	
2022	2022. 00. 00.외 11건 (매월)	5,870,000	"	
2023	2023. 00. 00.외 11건 (매월)	6,330,000	"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4)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25) 회의비 : 원칙적 사용불가(단, 15% 범위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

4.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같은 법 제36조 제2항 각 호²⁶⁾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차 개선명령, 2·3차는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4]와 같이 양구군 ◆◆◆◆◆이 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표 5]와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운영위원회를 총 16회 개최하여야 하나 12회 개최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6)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표 4]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운영위원회	명단
양구군 ◆◆◆◆◆ (11명)	시설의 장	
	거주자(이용자) 대표	
	거주자(이용자)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표 5] ◆◆◆◆◆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개최여부	○	×	○	○	○	×	○	○	○	×	○	○	○	○	×	○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 [시정] 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미보고된 2021~2024년도까지 예·결산 및 후원금에 대한 예·결산을 양구군과 해당시설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규정을 위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③ 후원금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직책보조비 19,650천 원을 반납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를 미개최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후 행

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운영위원회가 분기별 1회
씩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8]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장애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관 련 자

① 양구군	㉔(전 ㉔)	-----	㉔
② 양구군	㉔	-----	㉔
③ 양구군	㉔	-----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미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은 장애인복지시설(A, B, C)에 대하여 최근 4년 동안 총 4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미실시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현황

시 설 명	지도·점검 실시 여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B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C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장애인복지시설 예·결산 미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 제45조 및 「사회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표 2]와 같이 시설 예·결산서를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장애인복지시설 예·결산서 제출 및 공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시설명 (설치일)	시설 예산서			시설 결산서			비고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2020	A	X	X	X	X	X	X	
2021		X	X	X	X	X	X	
2022		X	X	X	X	X	X	
2023		X	X	X				
2020	B	X	X	X	X	X	X	
2021		X	X	X	X	X	X	
2022		X	X	X	X	X	X	
2023		X	X	X				
2020	C	X	X	X	X	X	X	
2021		X	X	X	X	X	X	
2022		X	X	X	X	X	X	
2023		X	X	X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업무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41조의6 및 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²⁷⁾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의 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시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27)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 사용 용도를 준수하고 명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2020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정기종합감사 시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부적정 사용²⁸⁾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시정·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표 3]과 같이 후원금 사용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후원금 수입에 대해 양구군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사용결과 미공개 현황

시설명	사용연도	연간 사용액(원)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시설 공고여부)	미준수 사항	비고
㉔	2020년	19,476,260	×	후원금 사용결과 미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1년	17,668,000	×		
	2022년	23,730,000	×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확인 소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2에서는 성범죄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

28) 2020년 종합감사 후원금 부적정 사용내역 지적현황 :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후원금 사용결과 미공개

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기관의 장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4]와 같이 **A**, **B**, **C** 등 3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종사자 6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하지도 않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 미확인 내역

(단위: 명)

시설명	경력 확인해야 할 인원	연 1회이상 미확인 인원	비고
계	6	6	
A	2	2	
B	3	3	
C	1	1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같은 법 제36조 제2항 각 호29)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시

29)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차 개선명령, 2·3차는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5]와 같이 B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표 6]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운영위원회를 총 16회 개최하여야 하나 12회 개최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5] B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운영위원회	명단
B (5명)	시설의 장	
	거주자(이용자) 대표	
	거주자(이용자)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표 6] B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개최여부	○	X	X	○	○	X	X	○	○	○	○	○	○	○	○	○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또한 [표 7]과 같이 양구군 C 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표 8]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운영위원회를 총 16회 개최하여야 하나 미개최하였는데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7] C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운영위원회	명단
C (5명)	시설의 장	
	거주자(이용자) 대표	
	거주자(이용자)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표 8] C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개최여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6. 장애인복지기금 관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7조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금 정산검사 시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한 후 정산검사를 확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70개의 보조사업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정산검사를 확정된 보조사업 수는 3개이며 67개의 보조사업은 보조단체로부터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지 않았거나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보조사업자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9]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내역

(단위 : 천 원)

해당년도	보조사업수	지원금액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완료	보조금 정산서 미제출 및 정산검사 미완료	비고
계	70	154,035	3	67	
2020년	17	28,870	3	14	
2021년	13	24,705	-	13	
2022년	19	47,680	-	19	
2023년	21	52,780	-	21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양구군 ☉ -----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전 ㉡) ----- ㉢은 0000. 0. 00.부터 0000. 00. 00. 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 감사일 현재까지 ㉣ -----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임에도 처분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기금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미보고된 2021~2024년도까지 예·결산 및 후원금에 대한 예·결산 내역을 양구군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규정을 위반한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를 미개최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운영위원회가 분기별 1회씩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9]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환수 소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정지 기간 중에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시장·군수는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고 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초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 처리 또는 정지 등 환수결정 후 납입고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압류의 절차로 환수하여야 하고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한 시·군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은 기초연금 부정수급 또는 과오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1]과 같이 ○○○의 6명에게 기초연금 총 1,713,860 원을 과오지급한 후 본 감사 기간 중 과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기초연금 과오지급 및 미환수 현황

(단위: 원)

지원대상자		과오지급 현황		과오지급 사유	환수여부	비고
성명	생년월일	금액	결정일자			
계		1,713,860				
		307,500	'22.00.	사망 이후 지급	미환수	
		323,180	'23.00.	사망 이후 지급		
		307,500	'22.00.	사망 이후 지급		
		193,920	'23.00.	부정수급 후 미회수		
		193,920	'23.00.	부정수급 후 미회수		
		193,920	'23.00.	부정수급 후 미회수		
		193,920	'23.00.	부정수급 후 미회수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과지급금 환수 소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는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고, 봉사 및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 장려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양구군에서는 노인들의 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³⁰⁾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익형³¹⁾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가 대상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참여 노인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시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격이 되지 않는 부적격 참여자의 참여 확인 즉시 해당사업 참여를 중단 조치하고, 과지급된 활동비는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2]와 같이 2022년에 자격 변동으로 참여 중단

30) 일자리 유형 : 봉사형(공익형,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근로형(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쉽, 고령자친화기업)

31)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일자리 유형

된 참여자에게 과지급된 810천 원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다.

[표 2]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성명	참여기간	변동사유	과지급액	회수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10,000 (0월: 270,000원, 0월: 270,000원, 0월: 270,000원)	810,000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양구군●●●● 종사자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지침” 이라 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에 대해 호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현 시설 근무경력에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경력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환산율을 적용하여 인정하고, 유사경력(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은 80%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지침” 이라 한다.)」(보건복지부)에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은 양구●●●● 종사자의 임면 보고를 받은 후 경력인정과 호봉 확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력 인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표 3], [표 4]와 같이 양구●●●●에서 종사자 임규희의 이전 경력에 대한 호봉 확정 시 지침에 근거 없는 경력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으로 80% 인정하여 호봉을 확정,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 종사자 경력인정 현황

시설명	대상자 (직위)	근무사항		입사시 호봉			
				인정 내역		적정 인정 내역	
		근무기관	근무기간	경력	호봉	경력	호봉
양 구 ●●●●				1년 2개월 (80%)	18호봉	없음 (0%)	17호봉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표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현황

(단위 : 원)

기존 경력인정사항				급여지급 내역('00. 0월~'00.00월)	
근무기관	근무기간	인정 기간	인정율 (%)	차액 (회수금액)	2,444,790
		1년 2개월 (80%)	80	경력인정 후 급여	159,517,850
				적정 급여	157,073,060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4.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41조의6 및 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³²⁾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이라 한다)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³³⁾, 자산취득비(토지, 건물 등 구입), 잡지출³⁴⁾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³⁵⁾ 사용 비율은 당해년도 지출금액 기준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 사용 용도를 준수하고 명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2020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정기종합감사 시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부적정 사용³⁶⁾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시장·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표 5] ‘노인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집행 현황’ 과 같이 ◆◆◆◆이 비지정 후원금 4건 11,200,000원을 사용불가 용도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표 6] ’

32)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33)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34) 잡지출 :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35) 간접비 :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과년도 지출

36) 2020년 종합감사 후원금 부적정 사용내역 지적현황 :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부적정집행 및 간접비 사용을 초과 집행

노인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률 현황’ 과 같이 ◆◆◆◆에서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 사용 비율이 규정 비율(50%)을 초과(7,145천 원)하였으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적정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5] 노인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시설명	연도	집행액	집행내역	비 고
합계		11,200		
◆◆◆◆	2021	2,500	/	업무추진비 (집행불가)
	2022	3,500		
	2023	3,500		
	2024	1,700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표 6] 노인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률 현황

(단위: 천 원,%)

시설명	연도	지출액			간접비 사용 비율	비고
		계	직접비	간접비		
◆◆◆◆	2021	14,290	-	14,290	100%	자산취득비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① 노인일자리 참여가 중단된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81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망자 등에게 과오지급된 기초연금 1,713,86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양구●●●●의 ----- 의 경력 인정 및 호봉 확정 오류로 잘못 지급한 보조금 2,444,790원은 회수하시고, 향후 종사자 임면 보고 시 경력 인정 및 호봉 확정에 대한 확인 후 보조금(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④ 용도 외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11,200천 원과 초과집행한 간접비 7,145천 원을 해당 시설 후원금 전용 통장으로 여입 조치하시고, 후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 후원금에 대한 집행 점검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어린이집 예·결산 미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 제45조 및 「사회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㉔의 10개소에서 [표 1]과 같이 시설 예·결산서를 공고를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예·결산서 제출 및 공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시설명 (설치일)	시설 예산서			시설 결산서			비고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2020	㉔	○	×	×	21.04.21.	×	×	
2021		○	×	×	22.06.07.	×	×	
2022		○	×	○	23.06.01.	×	○	
2023		○	×	○				
2020	㉕	○	×	×	21.05.12.	×	×	
2021		○	×	×	22.05.25.	×	×	
2022		○	×	○	23.06.01.	×	○	
2023		○	×	○				
2020	㉖	○	×	×	21.05.31.	×	×	
2021		○	×	×	22.04.14.	×	×	
2022		○	×	○	23.04.10.	×	○	
2023		○	×	○				
2020	㉗	○	×	×	21.03.31.	×	×	
2021		○	×	×	22.03.21.	×	×	
2022		○	×	○	23.05.19.	×	○	
2023		○	×	○				
2020	㉘	○	×	×	21.09.30	×	×	
2021		○	×	×	22.10.07.	×	×	
2022		○	×	○	23.05.03.	×	○	
2023		○	×	○				
2020	㉙	○	×	×	21.08.18.	×	×	
2021		○	×	×	22.08.23.	×	×	
2022		○	×	○	×	×	○	
2023		×	×	○				
2020	㉚	○	×	×	21.10.26.	×	×	
2021		○	×	×	×	×	×	

연도	시설명 (설치일)	시설 예산서			시설 결산서			비고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제출여부 (시설→군)	공고여부 (군)	공고여부 (시설)	
2022		×	×	○	23.05.16.	×	○	
2023		○	×	○				
2020	H	×	×	×	21.04.07.	×	×	
2021		○	×	×	22.05.11.	×	×	
2022		○	×	○	23.04.10.	×	○	
2023		○	×	○				
2020		I	○	×	×	21.04.07.	×	×
2021	○		×	×	22.08.17.	×	×	
2022	○		×	○	23.04.10.	×	○	
2023	○		×	○				
2020	J	○	×	×	21.11.01.	×	×	
2021		○	×	×	22.05.31.	×	×	
2022		○	×	×	23.06.01.	×	×	
2023		○	×	×				
2020	K	○	×	×	21.07.26.	×	×	
2021		○	×	×	22.06.22.	×	×	
2022		○	×	○	23.04.19.	×	○	
2023		○	×	○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 회수 소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 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

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표 2]와 같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퇴직적립금을 지원하고 ' 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표 2]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회수 현황

(단위: 원)

시설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회수대상	
						지급일	지급액
합계							5,824,550
E							200,320
							100,610
							175,730
							25,260
							369,150
							106,590
							52,080
							78,120
G							282,190
							1,137,380
							1,676,210
B						786,670	
C							150,690
							102,460
							103,310
F							250,400
							227,380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적정 관리사항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해져 있으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집행잔액은 개인별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표 3]과 같이 필요경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필요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 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별 정산하지 않았다.

[표 3] 어린이집 필요경비 집행현황

(단위: 원)

구분	2020년			위반사항	비고
	수납액	지출액	잔액		
㉔	8,243,000	7,194,570	1,048,430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보고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개인별 미정산	

※ 양구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① 어린이집의 2020~2024년도까지 예·결산 내역을 양구군과 시설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집 1년 미만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적립금 5,824,55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집에서 이용아동에게 수납된 필요경비 집행잔액 1,048,430원에 대해 개인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주의·개선 요구

제 목 ■■■■■ 관리·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양구군 © ----- 가

내 용

양구군(©)은 「양구군립 ■■■■■ 운영조례」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양구군립 ■■■■■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양구군립 ■■■■■ 현황

(단위: 점, 천 원)

구분	소재지	설립일	---- 보유현황	보유가액
행정재산		0000년	986	19,145,1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미술작품 수집에 따른 관련 절차 미이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양구군립 ■■■■■ 운영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군수는 ■■■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작가 및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는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작품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작품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품감정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2]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작품감정평가위원회 또는 수증심의위원회의 결정 없이 20건 총 5,195,100천 원의 미술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았다.

[표 2] ■■■■ 사전절차 미이행 작품수집 현황

(단위: 천 원)

수집방법	연도	건수	가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비고
합계		20건	5,195,100		
구입	2021~2023	2건	1,638,600	작품감정평가위원회 사후 개최	
기증	2021	18건	3,556,500	수증심의위원회 미개최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미술작품 구입예산 전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단위사업 간 세출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전용요구서 및 수정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예산을 전용³⁷⁾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전용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3]과 같이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예산 부족에 따라 단위사업 간 세출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전용요구서 제출 및 심사를 받지 않은 채 3건, 1,001,995천 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표 3] ■■■■■ 작품구입 예산 부적정 전용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집행액	비고
계		3건		부적정 전용액: 1,001,995		
2020	©	/	●	■■■■■ 운영(405-01)	300,000	구입(1점)
			●	문화예술 물품구입(405-01)	487,500	
2022	©	/	●	■■■■■ 운영(405-01)	700,000	구입(1점)
			●	문화예술 물품구입(405-01)	438,600	
2023	©	/	●	■■■■■ 운영(405-01)	490,104	구입(1점)
			●	문화예술 물품구입(405-01)	75,895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관람료 징수 업무 소홀

「양구군립 ■■■■■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르면 ■■■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양구군립 ■■■■■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³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37)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38) 1. 양구군민, 관내 군용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2. 호수문화관광권역 주민 및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주민: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3.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4. 단체(20명 이상):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5.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100분의 30을 감면

람은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입장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고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의 일반(성인) 관람료 6,000원 중 3,000원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야 하나, 2024. 2. 18.부터 2024. 3. 3.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유로 [표 4]와 같이 ■■■■■ 관람자에게 관련 증명서 확인 없이 724건, 2,172천 원의 관람료를 상품권 환급 없이 임의대로 감면하였다.

[표 4] ■■■■■ 관람료 임의 감면 내역

(단위: 명, 원)

일자	구분	관람인원	판매단가	합계	비고
계		724		2,172,000	
2024. 2. 18.	호수문화권(성인)	90	3,000	270,000	
2024. 2. 20.	호수문화권(성인)	11	3,000	33,000	
2024. 2. 21.	호수문화권(성인)	19	3,000	57,000	
2024. 2. 22.	호수문화권(성인)	11	3,000	33,000	
2024. 2. 23.	호수문화권(성인)	42	3,000	126,000	
2024. 2. 24.	호수문화권(성인)	71	3,000	213,000	
2024. 2. 25.	호수문화권(성인)	51	3,000	153,000	
2024. 2. 27.	호수문화권(성인)	31	3,000	93,000	
2024. 2. 29.	호수문화권(성인)	43	3,000	129,000	
2024. 3. 1.	호수문화권(성인)	166	3,000	498,000	
2024. 3. 2.	호수문화권(성인)	135	3,000	405,000	
2024. 3. 3.	호수문화권(성인)	54	3,000	162,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보관 미술품 재평가 미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따르면, 미술품은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운영규정(관리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2. 3. 29.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매뉴얼」을 마련 하였고, 이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에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 원 이상) 미술품에 대하여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을 분류하고 작품 가치에 맞게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에서 구입 및 기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작품 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의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작품에 대한 기준 설정과 보험가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저해하여 향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당한 보상 청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 ----- ㉠는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작품감정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작품을 수집하고 미술작품 구입을 위하여 단위사업 간 세출예산 전용없이 변경하여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양구군립 ■■■■■ 운영조례」 등에 따라 ■■■■■을 관리·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을 분류하고 작품 가치에 맞게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계약,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³⁹⁾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⁴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39) 배우자 월4만원, 첫째자녀 월3만원, 둘째자녀 월7만원, 셋째자녀이후 1명당 월11만원, 배우자 제외한 부양가족 월2만원

40)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 받은 경우 금전의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⁴¹⁾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 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는 등 가족수당이 부당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와 같이 양구군 공무원 36명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총 33,93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고 있었으며, 상당 기간동안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다 지급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41) 소멸시효: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표] 가족수당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대상자	환수사유	과다지급액
36명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가족사망 등	33,93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부당하게 지급한 가족수당 33,930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⑨, ①

관 련 자 ① 양구군 ㉠(전 ①) ----- ㉡

② 양구군 ㉢(전 ①) -----(전 -----) ㉣

내 용

양구군(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에 따라 [표 1]의 ㉤에 대한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표 1] ㉤ 공유재산 현황

(단위: m², 천 원)

구분	소재지	건물명	면적	용도
행정재산		㉤	64.13m ²	사무실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연간 사용료는 시
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4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이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2]와 같이 ㉡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음에도 무상 사용허가하여 7,664천 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다.

[표 2] 무상 사용허가 현황

(단위: m², 천 원)

구분	소재지	사용기간	사용단체	부당감면액		
				2021년	2022년	합계
건물 (사무실)			㉡ (사무실)	5,039	2,625	7,664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공유재산(행정) 무상사용 계획[㉠-00000(0000. 00. 0.)]

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

4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게 할 수 있으면,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하며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실·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고,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 ㉠에서는 [표 3]과 같이 재산관리관(㉡, 현 ㉢)이 지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에게 무상 사용허가하였다.

[표 3] ㉣㉤㉥㉦ 재산관리관 지정 현황

(단위: m²)

재산명	면적	재산구분	면적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지정
	197.46		113.91	㉡(현 ㉢)	
			19.42		
			64.13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이하 “무단점유”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 전 ㉡)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표 4]의 소관 공유재산을 양구군과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무실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에도 무단 점유자에게 2022년도부터 산정한 변상금 9,178천 원⁴³⁾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아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43) 무단점유 면적에 대한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액 변경 가능

[표 4] □□□□□□ 무단점유 현황

(단위: m², 천 원)

재산명	점유 면적	점유자	변상금 산정내역		
			2022년	2023년	합계
	64.13		3,151	6,027	9,178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전 ㉠) -----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으로
 ㉡(전 ㉠) -----(전 -----) ㉡은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
 -----로 근무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는 단체에 사용료를 부당 감면하고
 재산관리관의 권한이 없음에도 무상 사용허가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부적정하
 게 처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
 른 “**혼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혼계**] 위 관련자를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양구군의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 9,178천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시기 바라
 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번호: 14]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고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자경농민 취득 농지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⁴⁴⁾에 따라 직접 경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에는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및 매각·증여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표 1]과 같이 ○○○ 등 2명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총 3,924,480원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았다.

[표 1]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미추징 현황

(단위: 원)

납세자명	과세물건	과세표준	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비고		
							취득일	매도일	비고
계		146,070,000	3,924,480	3,363,840	373,760	186,880			
○○○		36,880,000	774,480	663,840	73,760	36,880			2년 이내 매각
◇◇◇		150,000,000	3,150,000	2,700,000	300,000	150,000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무신고가산세 포함

2. 귀농인 취득 부동산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대통령령⁴⁵⁾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⁴⁶⁾으로 정하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그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⁴⁷⁾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에는 유예기간내 주소지 이전,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및 매각·증여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표 2]와 같이 □□□ 등 3명이 귀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총 9,237,280원의 추징을 소홀히 하였다.

45) 각주 1)과 동일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7)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표 2] 귀농인 취득세분 감면 미추징 현황

(단위: 원)

납세자명	취득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461,859,000	9,237,180	8,313,460	461,860	461,860	
□□□			125,000,000	2,500,000	2,250,000	125,000	125,000	타산업종사
△△△			198,859,000	3,977,180	3,579,460	198,860	198,860	타산업종사
▽▽▽			138,000,000	2,760,000	2,484,000	138,000	138,000	3년 이내 주소지 이전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무신고가산세 포함

3.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상 생활환경정비사업⁴⁸⁾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고, 280만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

48)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 여부 및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의 매각·증여 및 타용도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표 3]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총 1,425,360원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는 등 추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 미추징 현황

(단위: 원)

납세자명	취득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비고
○○○			38,316,500	1,425,360	1,287,430	76,630	61,300	2년 이내 매각 (매도일 000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무신고가산세 포함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⁴⁹⁾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⁵⁰⁾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가 속하는 자가 3억원⁵¹⁾ 이하인 주택을

49) 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50)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⁵²⁾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1가구 1주택 유지 또는 3년 이내 주택의 매각·증여·타용도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표 4]와 같이 ♣♣♣ 등 3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후 해당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총 3,991,5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분 미추징 현황

(단위: 원)

납세자명	취득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비 고
계			294,700,000	3,991,500	3,467,400	229,400	294,700	
♣♣♣			115,000,000	1,426,000	1,311,000	-	115,000	해당 주소지 미전입
♡♡♡			114,700,000	1,720,500	1,376,400	229,400	114,700	해당 주소지 미전입
♣♣♣			65,000,000	845,000	780,000	-	65,000	주소지 이전 (상가주 위반)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무신고가산세 포함

5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4억원

52)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요건을 상실한 지방세 9건 총 18,578,520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사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등 7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자료확인 소홀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⁵³⁾를 정하고 있다.

53) 지방계약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제7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⁵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㉔)은 지방의회의원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구군(㉑) 및 양구군의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구군(㉔)의 지방의회의원 등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과 관련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 10. 1.부터 2024. 3. 18. 감사 개시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와의 계약 확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사 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제1장 1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⁵⁵⁾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또한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양구군(☉ 등 7개부서)은 [표]와 같이 86건(1,580백만 원)에 대하여 동일한 시기·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 건을 통합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구간·공정·시기별로 분할하여 1인 건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51,88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55)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표] 공사 등 분할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발주부서	계약명	예정가격	예산절감 가능금액 ⁵⁶⁾		
			계약금액	적정 계약금액	차액
건수: 86건		1,580,447	1,442,209	1,390,608	51,881
㉓		666,612	601,445	586,557	15,168
㉔		32,500	29,250	28,600	650
㉕		76,320	68,690	67,162	1,528
㉖		548,834	497,496	482,974	14,522
㉗		48,560	43,704	42,609	1,095
㉘		57,343	52,430	50,462	1,968
㉙		150,278	149,194	132,245	16,949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주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6) 낙찰하한율: (2인이상 견적제출) 물품, 용역 1억 원 미만 88% / 공사 87.745% 적용

[일련번호: 16]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공사의 계획 수립 및 변경계약 업무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등 11개 부서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에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철저히 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 공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 등 11개 발주부서)은 [표 1]과 같이 36건(611,192천 원)의 공사계약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로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사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였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이후 현지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량, 물량 증가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증액(36건 평균 61%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소액 수의계약 (증액)변경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내역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	증액 금액	증감율
합계: 36건			611,192	332,098	61%
			194,382	104,950	63%
			15,552	9,305	60%
			56,203	25,489	46%
			37,113	43,003	113%
			50,134	24,268	60%
			19,734	8,774	44%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내역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	증액 금액	증감율
			11,115	15,758	142%
			79,726	45,006	64%
			107,859	43,990	46%
			19,619	3,130	16%
			19,755	8,425	43%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붙임] 참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⁵⁷⁾과 제2항⁵⁸⁾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통보’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57) 지방계약법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58) 제30조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 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초 설계내용을 바꾸지 아니하고 증가되는 부분을 별도로 이행할 수 있는 추가 부분은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추진⁵⁹⁾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 등 발주부서)이 시행한 36건의 공사담당자는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공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사업량을 추가⁶⁰⁾하는 등 공사 계획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더욱이 당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행할 수 있는 추가 부분은 별개의 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동일한 계약건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그 결과 양구군은 [표 2]와 같이 2020. 10. 1.부터 2024. 3. 29. 감사일 현재 까지 36건(611,192천 원)의 계약을 공사계획단계부터 공사량을 철저히 산출하지 않은 채 1인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 계약 방법과 비교하여 총14,932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59) 2022 4.1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60) 최초 계약 당시 1인수의계약 가능범위인 2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증액됨으로써 계약금액 2천만원 초과(36건)

[표 2] 2인견적 비교시 예산절감 가능금액

(단위: 천 원)

발주부서	계약명	예정가격	예산절감 가능금액 ⁶¹⁾		
			계약금액	적정 계약금액	절감가능 금액
합계: 36건		697,937	611,192	612,404	14,932
		231,073	194,382	202,755	4,476
		17,279	15,552	15,161	391
		62,447	56,203	54,794	1,409
		41,235	37,113	36,182	931
		55,704	50,134	48,877	1,257
		21,927	19,734	19,239	494
		12,350	11,115	10,837	278
		88,005	79,726	77,220	2,506
		124,168	107,859	108,951	2,204
		21,799	19,619	19,128	491
		21,950	19,755	19,260	495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주의] ① 향후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철저히 한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1) 낙찰하한율: (2인이상 견적제출) 물품, 용역 1억 원 미만 88% / 공사 87.745% 적용

[일련번호: 17]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참가 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양구군 ㉠(전 ©) -----

내 용

양구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참가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참가 지원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기간	교부결정액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2	<input type="checkbox"/> (000)	2022. 0월 ~ 2022.00월	89,440	-	89,440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절차 미이행)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

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절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양구군은 「보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등 공모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모절차를 제외하려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본 사업의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검토나 객관적인 사실이 없음에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모예외 사유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근거를 들어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이를 통과시키는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해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2. 보조사업 정산 및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생산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로서 해당 일자 등 주요 기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서를 결재하거나 수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는 등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양구군(☐)은 2023. 0. 00.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접수하고도 장기간(약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 업무 담당자는 관련 업무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이를 우려한 관리자(----, ----)의 지속된 업무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뒤늦게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정산검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가 날인하여 정식 결재서류(정산검사서)를 생산하였음에도 2024. 3. 27.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온나라)에 등록처리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는데,

[표 2]와 같이 해당 문서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하면서 결재를 실시한 해당 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해당 일은 표기조차 하지 않는 등 결재일을 부적정하게 표기하였고, 관리자(----, ----)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결재(날인)한 사실 도 확인되었다.

결국 문서를 생산하면서 기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공기록물로 적정하게 등록·관리하지 않은 결과, 정산검사가 실제 언제 완료되어 해당 문서가 작성·결재되었는지 시점조차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표 2] 정산검사 지연 및 공공기록물 부적정 등록·관리 현황

실제 정산검사 완료	결재서류 작성일 표기사항	정산보고서 접수	정산확정 통보	비고
2023년 6월 말~7월 초 (관련자 진술에 의함)	2023년 0월 일	2023. 0.00.	2023. 7.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사업계획 변경 관리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기간 및 보조금 사용의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비목별 경비의 배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후, 본 사업의 추경 예산이 확보되자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각 예산비목을 증액하여 신청하였고, 양구군(☐)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교부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사후 승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사업계획 임의 변경 사용 및 부적정 승인 내역

(단위: 천 원)

항목	당초사업계획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전)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	총 사업비 (A+C)	비고
	예산액 (A)	실집행 (B)	차액 (A-B)	예산액 (C)		
총계	60,000	48,040	11,960	29,440	89,440	추가 교부결정 (2022.00. 0.)
	15,000	-	15,000	12,300	27,300	
	19,000	19,000	-	-	19,000	
	15,000	10,000	5,000	5,000	20,000	
	11,000	19,040	△8,040	12,140	23,14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절차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하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⁶²⁾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 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경

62) 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③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4]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물품 제작 및 임차 등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여 계약을 추진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집행 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식비, 소모품 구입비 등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출목적이 불분명하여 그 집행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검사 시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정산검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건명	지출처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 사항
소계	총 11건		6,027,670	
			1,43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42,000	검수 증빙 미첨부
			3,000	지출목적 미기재, 검수 증빙 미첨부
			3,000	지출목적 미기재, 검수 증빙 미첨부
			20,700	검수 증빙 미첨부
			1,120,000	대상자 명단 미첨부
			1,32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1,540,000	계약 관련 자료 미첨부

건명	지출처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 사항
			71,000	검수 증빙 미첨부
			452,970	검수 증빙 미첨부
			25,000	지출목적 미기재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양구군 ㉠(전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 까지 ㉣ 지원 보조사업 -----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정산검사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일자를 부적정하게 표기한 후 결제를 득하고, 2024. 3.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공공기록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금 집행 건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 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양구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 지원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기간	교부결정액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2		★★★★★ (000)		220,000	-	220,000	-
2022					65,000	-	65,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교부결정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를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 활동비([표 2])'를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간단한 산출내역만을 기재하였고,

이에 양구군(☹)은 단체별 적정 지원 규모와 집행 대상 항목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부 결정하고, 이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 신청을 하면서 당초 교부신청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산출 근거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 없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예산으로 식비에서부터 필요물품

구입, 유류비까지 사실상 비목별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단체별 해당 예산 편성 여부도 상이(총 32개 ---- 중 28개 ---- 편성)한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확정·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 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산출기초		실집행	지출건수	비고
	최초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250천 원 × 38---- = 9,500천 원	250천 원 × 28---- = 7,000천 원	25개 ----단체 → 5,932천 원	총 68건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절차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하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⁶³⁾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물품 임차 및 제작 등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지출결의서 작성을 누락한 채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집행 건에

63) 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③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숙박비 및 식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거나 유류비에 대한 대상 차량 및 유류 목적을 기재하지 않아 집행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검사 시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부적정 사항	건수	총 지출액	비고
	상세내역 및 관련 증빙부족, 지출결의서 미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등	총 60건	45,624	
	상세내역 및 관련 증빙부족, 지출결의서 미작성 등	총 42건	25,573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4]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에 지연하여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공공기록물 지연접수 현황

사업명	문서 제목	보조사업자 제출	접수등록번호	비고
		2023. 1. 0.	㉠-00000 (2023. 3.00.)	65일 경과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조성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①

내 용

양구군(①)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조성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조성 지원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사업장)	사업기간(당초)	교부결정액				
				합계 (100%)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50%)
2020				99,400	19,880	5,964	23,856	49,7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이월 절차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산림청 [A])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하되,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산림청([A]), 강원특별자치도([B]), 양구군([I])은 각각 보조사업자에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우선 산림청장, 도지사, 양구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나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의 변경 등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I])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표 2]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이월 여부를 자체 판단만으로 임의 결정하여 처리⁶⁴⁾하면서 이에 대한 산림청([A]), 강원특별자치도([B])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64) 이월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명시이월(9,688,000원+38,752,000원=48,440,000원)

[표 2] 보조사업비 이월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사업자 이월신청	이월승인		
			계	국비	도비	군비		산림청	강원특자도	양구군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조성	48,440	-	48,440	19,376	8,719	20,345	미신청	미승인	미승인	미승인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자부담 예치 미확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자와의 일치 여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⁶⁵⁾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이 예치된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본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이 보조금 전용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명령 없이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다.

65)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표 3] 보조사업 자부담금 미예치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장)	예산액			자부담 사전예치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거래내역 제출
		계	보조금	자부담			
2020년(이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조성		99,400	49,700	49,700	×	2019. 11. 00.	2019. 12. 0. ※ 자부담금 거래일자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⁶⁶⁾」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 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6) 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 6. 27. 제명 변경)

그런데, 양구군(㉠)은 [표 4]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본(원본 서류 분실 추정)만 갖추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또한 접수 처리하지 않아 실제 신청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보조사업 관련 문서 미접수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장)	관련 문서	문서접수 처리	비고
2020년(이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조성		보조금 청구서	×	2019. 11. ※ 사본(원본 없음)
		보조금 교부 신청서	×	202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보조금 정산 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양구군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고 적합한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5]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정산 종결하고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 확정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확정 통지 미이행 현황

사업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확정	보조사업자 통지 여부	비고
2020년(이월)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조성	2019. 11. 00.	×	
	2020. 03. 00.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양구군(©)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업기간	교부결정액			
				합계	국비	군비	자부담
2020				50,000	20,000	15,000	15,000
				35,000	14,000	10,500	10,500
				5,000	2,000	1,500	1,5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계약관리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 구매에 대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⁶⁷⁾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분할계약의 금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계약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표 2]와 같이 동일 시기의 단일공사로서 보조사업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업체와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67)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에 따라 2022. 12. 31.까지 특례 적용(추정가격 기준)

: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용역·물품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예정가격⁶⁸⁾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율⁶⁹⁾ 적용 시 총 2,819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다.

[표 2] 보조사업자의 부적정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계약명 (사업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계약일 (거래명세서 제출)	정당계약	실제 계약방법	최대절감 가능금액
합 계		23,000					
2020		8,000		'20. 11. 00.	①지정정보 처리장치 이용 (2인 이상 수의견적 공고) ②일괄계약	①지정정보 처리장치 미이용 (1인 견적 수의계약) ②분할계약	2,819
		15,000		'20. 11. 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무자격업체와의 계약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 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벌칙)에 의거 면허 없이 건설공사를 행한 자에게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의 내용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 보조사업자가

68)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69) 공사는 87.745%, 물품·용역은 88%

공사의 내용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종을 등록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나, 필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 시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무자격업체와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계약체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 등록업종	등록여부
	23,000		'20. 11. 00.		미등록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정산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고 적합한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4]와 같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정산 종결하고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 확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

[표 4] 정산검사 확정 통보 미이행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검사	정산 확정통보
2020		2020. 00. 24.	2020. 00. 31.	미이행
		2020. 00. 24.	2020. 00. 31.	
		2020. 00. 24.	2020. 00. 31.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양구군 ★★★★★ 개최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는 양성평등의식 개선 및 양구 여성 화합을 위해 [표 1]과 같이 '양구군㉔㉔㉔㉔(대표자 ㉕, 이하 "㉔㉔㉔㉔" 라 한다)' 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구군 ★★★★★ 개최 지원사업" 을 추진하였다.

[표 1] 양구군 ★★★★★ 개최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업 연도	사업기간 (실제 행사개최일)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교부일자	교부금액	정산서 제출일	정산 검토일	집행액	잔액
2023		'23. 10. 00.	33,000 (전액 군비)	'23. 00. 06.	'23. 00. 07.	31,796	1,204
2022		'22. 10. 00.	33,000 (전액 군비)	'22. 00. 04.	'22. 00. 04.	32,035	965
2021		'21. 11. 00.	33,000 (전액 군비)	'21. 00. 21.	'21. 00. 21.	28,254	4,746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표자 결재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양구군(㉔)은 ○○○○가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관련 법령·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시정·보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는 [표 2]와 같이 3년간 보조금 92,085천 원을 총 53회에 걸쳐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품의 및 집행계획서 작성 등 통제 수단도 없이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식사 비용 등을 외상으로 거래한 뒤, 행사 개최일 이후에서야 일괄 지출하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특히 [표 3]과 같이 행사개최일 이후 집행한 식비의 경우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 및 이체내역서만 제출함에 따라 정산보고서만으로는 집행용도·대상, 집행단가 준수 등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양구군(㉔)은 현지조사나 실적보고서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부실한 정산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표 2] 보조금 집행 현황

연도	행사 개최일	전체 집행건수 (집행기간)	행사 개최 이전 집행		행사 개최 이후 집행		사전품의서 작성 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건수	금액 (천 원)	건수	금액 (천 원)		
합계		총 53건	총 2건	186	총 51건	91,899	전부 미작성	전부 미작성
2023		25건 ('23. 00. 0. ~ '23. 00. 0.)	-	-	25건	31,796	×	×
2022		14건 ('22. 00. 00. ~ '22. 00. 0.)	1건	16	13건	32,019	×	×
2021		14건 ('22. 00. 00. ~ '22. 00. 00.)	1건	170	13건	28,084	×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식비 관련 집행 명세 (행사 개최일 이후 집행)

연도	실집행일	집행 적요	집행처	집행액(원)	비고
			총 12건	11,654,230	
2023		임원 증식비		148,000	▶ 사전품의.집행계획 미흡, 지출결의서 미작성 ⇒ 보조금집행 통제수단 미비
		중식 재료비		960,860	
		중식 재료비		50,000	
		중식 재료비		3,806,000	
		중식 재료비		220,000	
2022		행사진행요원 식대		320,000	▶ 카드영수증.이체내역서만 집행 증빙자료로 첨부 ⇒ 집행용도 및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음 (사진, 참석자 명부 등)
		행사 평가회 식사		400,000	
		기념 떡 구입		4,000,000	
2021		행사진행요원 식대		336,000	
		행사 평가회 식사		460,000	
		차재료 및 내빈차림		743,370	
		행사초청내빈 차림		210,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양구군(㉔)는 ㉔㉔㉔㉔가 [표 4]와 같이 행사 개최 출연자에 대한 인건비(출연료) 총 3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표 4] 인건비(출연료) 지급 명세

연도	집행일	적요	지급액 (원)	실제 원천징수액 (원)	정당 원천징수액 (원)	비고
			400,000	-	26,400	
2023			100,000	-	-	미대상 (금액)
			300,000	-	26,400	원천징수 미이행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경비 임의 변경 및 정산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㉔)은 ㉔㉔㉔㉔가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비목 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표 5]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비 비목 보조금을 임의로 초과 집행하거나(2022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보조비목(세목)을 명시하지 않고 집행실적을 입력하여 집행내역이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2023년), 이를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하여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당초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비교

(단위: 천 원)

연도	당초 사업계획		정산보고		
	보조비목	예산액	보조비목	집행액	비고
2023	행사운영비	13,000	행사운영비	31,795	실적보고서상 보조비목을 전부 행사운영비로 기재 ⇨ 당초 경비배분 대로 집행되었는 지 확인 불가하지만 그대로 정산 처리
		6,000			
	중식비	5,600			
	기념품 제작	4,900			
	기타운영비	3,150			
2022	행사운영비	6,000	행사비	22,539	일괄 용역계약 체결
		5,000 ⇨			
	초청공연팀	12,000			
	기념품 제작	5,000			
	기타운영비	5,000			
2021	행사운영비	7,000	기타비	22,627	일괄 용역계약 체결
		4,000			
	초청공연팀	14,000			
	기념품 제작	3,000			
	기타운영비	5,000			
			운영비	6,899	초과 집행
			기타비	22,627	일괄 용역계약 체결
			물건비	2,990	
			운영비	2,637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전용계좌 및 이자 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31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검사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경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구군(☐)은 ○○○○가 별도로 개설한 전용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및 지방보조금액 확정 통지 후 집행잔액 및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함에도

[표 6]과 같이 매년 3~5개 보조사업비를 1개의 계좌에 교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각 보조사업별 집행내역이 혼재되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명확성·투명성을 저해하였고,

각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타 사업 정산 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 전부를 일괄 반환하게 하는 등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인 및 이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6] ○○○○ 보조금 전용계좌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사업명 (회계구분)	교부액	이자 반환 요청 여부	비고
2023			33,000	발생이자 없음	전용계좌 혼용 (3개 사업)
			16,000		
			5,000		
2022			33,000	×	전용계좌 혼용 (5개 사업)
			15,000	○	
			1,920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정산 시 발생이자 일괄 반환요청
			16,000	×	
			4,000	×	
2021			33,000	×	전용계좌 혼용 (4개 사업)
			15,000	○	
			4,000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정산 시 발생이자 일괄 반환요청
			16,000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미신고 원천징수 세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강원특별자치도 주의 요구

제 목 ☁☁☁☁ 상품개발 및 소비시장 다변화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양구군(㉠)은 [표 1]과 같이 '㉠' (대표자 ○○○○, 이하 "㉠" 한다)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0000년 ☁☁☁☁ 상품개발 및 소비시장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 상품개발 및 소비시장 다변화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 원)

사업 연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계	보조금	자부담
			50,000	50,000 (전액 준비)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을 시 재공모하는 등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⁷⁰⁾ 이러한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된 지방보조사업자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70)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양구군(㉠)은 해당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님에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모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를 사업대상자로 명시하고 내부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없었음에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1차 공모 기간이 종료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본 사업을 추진한 사실 또한 확인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예산 계상 신청	'00년	예산 계상 신청 없음	
내부계획 수립	'00. 10. 19.	0000년 ㉠ 시책사업 추진계획	㉡를 사업대상자로 명시
공모절차 (선정 공고 등)	'00. 01. 17.		공모절차 안내 (지원대상 : ☞☞☞☞ 생산농가 및 단체)
신청서 접수	'00. 04. 28.	2022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제출기한 이후 제출 (제출기한 '00. 1. 18.부터 약 3개월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	'00. 05. 02.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미이행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검토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71) 지방보조금 관련 금지행위, 제재 및 벌칙, 수행상황 점검 등을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하고,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표 3]와 같이 ㉡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에 대해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교부조건 명시 및 청렴서약서 확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 현황

교부 개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준수사항		
교부신청서 제출 (● → 군)	교부결정 통지 (군 → ●)	신청내용 적정 여부 조사 (검토보고 등)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서식 2)	교부조건 명시
'00. 5. 3.	'00. 5. 6.	미이행	미제출	① 금지행위 관련사항 : 미기재 ② 제재 및 벌칙 관련사항 : 미기재 ③ 수행상황 점검 관련사항 : 미기재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71)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3. 지방보조사업 계약관리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 및 양구군(㉠)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⁷²⁾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정정보처리장치⁷³⁾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과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⁷⁴⁾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72)

《보조조건》 * 관련 내용 발췌

3.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②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③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④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① 천재지변,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③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사업 수행 상황 파악 및 정산보고서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는 [표 4]와 같이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사업수행자를 임의로 선정해 1인 견적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구군(㉠)은 ㉡가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1건의 견적서만을 보조사업 경비 산출근거로 제시하는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율 적용 시⁷⁵⁾ 6,00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5) 예정가격 :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 낙찰 하한율 : 공사 87.745%, 용역·물품 88%

[표 4] ㉠ 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보조사업 신청 내용 (산출근거로 제시한 견적서)			정산보고서 내용 (실제 계약 체결)				
구분	견적금액	공급자	구분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비고
소계	50,000		소계	50,000			
신규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프로모션	29,500	㉠	양구 ㉠㉠㉠㉠ 전략상품 시제품 개발 및 신규유통채널 발굴 계약	50,000	㉠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인상 견적 수의계약 시 ↓ 절감가능액 6,000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및 신규 개발	10,500						
신규 상품 레시피 개발	10,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조림·숲가꾸기사업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①

내 용

양구군(①)은 산림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증진되고, 산림의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사업 종료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적정 사용여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은 ㉠, ㉡간 다른 사업장임에도 같은 날, 동일한 작업인에게 안전화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부적절함에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준공 처리하여 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비 5,966,200원(엘립 2,478,200, 양륙 3,488,000)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업비 5,966,200원(㉠ 2,478,200, ㉡ 3,488,000)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업비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강원특별자치도 징계·훈계·시정·주의·권고 요구

제 목 ■■■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①

징계대상자 ① 양구군 ① ----- □

② 양구군 ① ----- □

※ 훈계대상자 양구군 ①(전 ①) -----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양구군(①)는 세계 유일의 특색을 갖춘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이 공존하는 ■■■■■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이라 한다)에 따라 조성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 ■■■■■ ■■■■■ 조성사업” (이하 “■■■■■조성사업” 이라 한다) 추진 중에 있다.

[표 1] ■■■■■ 조성사업 진행 용역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도금액	용역기간	용역사 (대표)	비고
해양분지(■■■■■■■■)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군계획시설 결정 등 1식	765,400	'20.5.00.~ '23.8.0.		중지 중 ('23.7.00.)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7,716	'20.11.0.~ '21.4.0.		중지 중 ('21.3.0.)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37,900	'20.11.0.~ '21.2.00.		중지 중 ('21.2.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토지이용계획 수립 부적정

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이용현황은 [표 2]과 같으며 전체 편입 면적 중 100.0%가 농림지역이고, 그 중 98.06%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 조성사업 편입토지 이용 현황

(단위: m²)

구분	필지수 (중복)	토지이용		지적		비고
		용도지역	세부이용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4	-	-	436,890.9	284,435.8	
■■■■ 조성사업	48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319,421.9	258,460.4	
	4	"	농업보호구역	85,715.2	20,474	
	2	"	농업진흥지역 외	31,753.8	5,501.4	준보전산지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이용계획이 복합된 필지는 공부면적 중복 합산

「농지법」 제2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⁷⁶⁾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다음 각 호⁷⁷⁾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76)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전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探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그리고, 「농지업무편람(이하 “편람” 이라 한다)」 제2장 2-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라 함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및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로 말하며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등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전에는 ■■■■■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내 행위 가능한 범위(다년생식물 식재, 고정식 온실 등)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전에 [표 3]과 같이 ■■■■■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농업진흥지역내 행위를 제한한 시설물 및 작물을 식재하여 실질적인 ■■■■■을 조성하였다.

[표 3] ■■■■■ 조성사업 완료 및 추진중인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도금액 (관급포함)	사업기간	시공사	추진상황
■■■■■ ■■■■■ (경관작물원) 조성사업	1식/1ha	123,909 (237,275)	'21.6.00.~ '21.10.00.		완료
■■■■■ ■■■■■(작물원) 조성사업	1식/2ha	600,146 (763,797)	'21.10.00.~ '22.9.00.		완료
■■■■■ ■■■■■ (작물원) 산책로 조성사업	L=2.6km	61,305 (229,127)	'22.11.0.~ '22.12.00.		완료
■■■■■ ■■■■■ 조성사업(조경)	1식/14.3ha	846,000 (1,162,145)	'23.1.0.~ '23.12.00.		1차분 완료 (조성 중)

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미 이행

「농지법」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78)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않게 된 경우로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편람 제5장제2절제1항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주로 녹지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7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의 시행 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4]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성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를 위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9)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한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지 않고 [표 3]과 같이 ■■■■조성사업을 발주·시행하였다.

[표 4]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의견

협의일자	관련기관	검토의견
'21.00.00.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정 부지에 편입된 농지(212,097㎡)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필요한 지역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농림→계획관리지역)을 수반한 군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협의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21.00.00.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이용·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움
'21.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당위성, 구역경계조정(농업진흥지역의 단절 지양), 진입도로계획 등 세부적인 검토가능 자료 요구
'22.00.00.	양구군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정지에 편입된 농지(164,704㎡)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필요함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소홀

가.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소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 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제6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등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목원정원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에

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원정원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원조성예정지에 대한 지정과 정원조성계획 승인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확정과 공공성 확보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 협의, 국유지에 대한 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했으나 관련 절차의 이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2019. 00. 0.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가내 시 통보 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확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재해·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양구군(①)는 ■■■■ 조성사업은 개발사업⁸⁰⁾⁸¹⁾ 추진(공사 착공 전) 전에 미리 환경이나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⁸²⁾에게 제출 및 타당성을 검토 받아 사업계획 반영하기 위하여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표 5]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5] ■■■■ 조성사업 진행 용역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도금액	용역기간	용역사	비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7,716	'20.11.0.~ '21.4.0.		중지 중 ('21.3.0.)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37,900	'20.11.0.~ '21.2.00.		중지 중 ('21.2.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르면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 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8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7,500제곱미터 이상
 8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8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지방환경청 / 재해영향평가 시장·군수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이하 “개발계획 등”이라 한다)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⁸³⁾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조성사업 사업대상지 284,435.8㎡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7,500㎡의 약37.9배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기준 30,000㎡의 약9.5배에 이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평가 및 협의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

83)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 착공 이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사업비 집행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아야 되고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면 안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은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중이나 사업계획 미 확정, 행정절차 이행 소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표 7]과 같이 도비를 포함하여 1,023,482천 원이 불용되어 665,263천 원의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양구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7] 사업비 불용 및 예산 반납 현황

(단위: 천 원)

보조사업명	예산액 (도비)	집행액 (도비)	불용액 (도비)	반납액 (도비)	비고
	3,477,385 (2,280,678)	2,453,902 (1,615,415)	1,023,482 (665,263)	1,023,482 (665,263)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예산의 이월제도에 따라 1,023,482천 원이 불용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인 [표 8]의 다수의 사업이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원인행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원인행위 및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을 위하여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8] 기 계약상대자에 대한 원인행위 미 등록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계		도급자		관급자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	760,675	7	671,368	12	89,307	
■■■■■ 조성사업(--)	10	562,451	2(감리 1)	479,551	8	82,900	
■■■■■ 조성사업(--)	2	111,060	2(감리 1)	111,060	-	-	
■■■■■ 조성사업(--)	5	49,576	1	43,169	4	6,407	
■■■■■ 조성사업(--)	2	37,588	2(감리 1)	37,588	-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공사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2장, 제13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경

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도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는 품의서.계획서, 계약서,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⁸⁴⁾ 등으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항목별 차수계약물량의 합계가 총공사계약물량이 되고 각 차수계약금액의 합계가 총공사금액이 되므로 각 차수계약물량은 총공사금액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전체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양구군(①)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납품받은 설계서의 내용이 특별히 불분명하거나 오류·누락사항 등이 없으므로 당초 설계에 따라 ■■■■ 조성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교목인 ----- 의 경우 당초 설계 반영된 490주 대비 27.5배인 13,473주(H1.0×W0.4), 지피식물인 ----- 의 경우 당초

84) 산출내역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설계 반영된 지피식물 전체인 33,810본 보다 많은 39,700본(10cm)을 1차분 설계 변경을 통해 반영하는 등 당초 납품된 설계도서를 무시한 채 임의로 조성계획을 변경 시행하였다.

또한 당초 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교목인 ----- 는 35주(H2.0×W1.0)만 설계 반영되었고, 관목인 ----- 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1차분 설계 변경을 통하여 ----- 13,473주(H1.0×W0.4) 및 ----- 39,700본(10cm)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약물량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1차분 계약물량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체 계약물량에 대한 설계 변경 없이 1차분 사업물량에 대해서만 설계변경 시행하였다.

더불어 1차분 사업물량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사업물량 증가분에 따른 사업비에 비례하여 토목부분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나 전체 사업물량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아 [표 9]와 같이 실질적으로 1차분 관급자재 증액분인 218,265천 원 상당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9] ■■■■■ 조성사업(조경-1차) 설계변경 내역

라. 사업비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전체분	합계	금3,079,786,000원	변동없음	변동없음
	도급액	금1,869,416,000원	변동없음	변동없음
	관급액	금1,210,370,000원	변동없음	변동없음
1차분	합계	금1,064,265,000원	금1,064,265,000원	변동없음
	도급액	금1,064,265,000원	금846,000,000원	감 218,265,000원
	관급액	-	금218,265,000원	증 218,265,000원

양구군 ① ----- ㉠은 0000. 0. 0.부터 ----- 까지, ① ----- ㉡은 0000. 0. 00.부터 ----- 까지 ■■■■■ 조성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 으로 근무하면서

사업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어 ■■■■■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해제 등의 절차 이행 없이 파쇄석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가설건축물 축조 및 다년생 식물 식재 조성 등 실질적인 ■■■■■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0000년도에 발주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계획 미 확정으로 인하여 용역 중지 중에 있고, 사업 착공 전 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으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없이 착공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1,023,482천 원(도비 665,263천 원)이 불용되어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양구군 재정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 조성사업(조경) 1차분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의 오류나 불분명한 사항 등이 없는데도 당초 설계 반영된 식재 수종 대부분을 삭제하고 특정 수종을 반영하는 등 당초 납품된 설계도서를 무시한 채 임의로 ■■■■■ 조성계획을 변경 시행하였고,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체분에 없는 신규 증가 물량을 차수분 설계에 반영하였음에도 전체분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설계변경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218,265천 원이 증가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 및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양구군 ㉠(전 ㉠) -----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는데도 다
년생 식물 등을 개별·발주 시행하는 등 「농지법」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에 「강

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른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전용 등 적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 착공에 필요한 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1차분 설계 변경을 통하여 증가한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차수분 및 전체분 설계 변경을 통하여 장기계속공사 계약 절차에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 조성계획을 확정하시고, 필요시 수목원조성법에 따라 ■■■■■ 조성 예정지 고시 및 ■■■■■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방류수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소규모하수도를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물량	계약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700m ³ /일 오수관로 6.1km	8,964	'22.00.00.	'22.00.00.~ '26.00.00.	
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500m ³ /일 오수관로 11.9km	10,821	'22.00.00.	'22.00.00.~ '26.0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는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 [A]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추진하면서 토공 운반 등 232,995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추진하면서 토공 운반 등 229,96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462,955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A]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독 소홀

가. 토공 운반 등 사업비 과다 계상

양구군(☑)는 공사중 선정된 사토장 및 토취장의 운반거리가 조정⁸⁵⁾되었음에

85) 사토(토사, 풍화암) 운반거리 조정 : 20km → 0.1km, 유용토 운반거리 조정 : 10,262m²(20km) → 5,858m²(20km), 1,200m²(7.33km)

도 운반거리를 조정하지 않았고,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르면 맨홀 실명판은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부속물이 아니며,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재 보관부지를 임대하지 않았고 공사현장 CCTV가 반영되어 있어 설계 반영이 불필요하고, 발주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한전주이설 비용을 도급액에 반영하여 감액해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158,852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2] 토공 운반 등 조정 내역

(단위: 천 원/제경비 포함)

구 분	단위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계		-	332,412	-	173,560	-	△158,852
토공 운반(사토,유용토)	m³	12,850	266,933	9,582	173,560	△3,268	△93,373
맨홀 실명판제작설치	개	81	10,330	-	-	△81	△10,330
관급자재 관리비	식	1	34,413	-	-	△1	△34,413
한전주이설	개	4	20,736	-	-	△4	△20,736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차선도색 과다 계상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종, 4종, 5종⁸⁶⁾을 사용하도록 KS규격(KS M 6080)에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3]과 같이 시공비가 경제적인 2종 수용성형 차선도색으로 충분히 재귀반사성능이 가능한 백색 및 황색 실선구간을 4종 용착식으로 설계 반영하여 4,089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86)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용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표 3] 차선도색 조정 내역

(단위: 천 원/제경비 포함)

공 종	당 초<A>			변 경			증/△감<B-A>
	규 격	수 량	사 업 비	규 격	수 량(㎡)	사 업 비	사 업 비
차선도색	4종(응착식) 백색선	339	9,171	2종(상온식) 백색선	339	5,082	△4,089
	황색선	53		황색선	53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가설사무실 과다 계상

「건설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2-1 가설물의 한도) 편에 따르면 현장사무소 등의 한도는 공사규모(직접노무비)에 따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공사의 설계내역 상 가설사무실(사무소, 실험실, 창고, 숙소)는 650㎡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가설사무실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료를 설계내역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확인한 결과 가설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총 474㎡만 설치하고 176㎡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않았고, 실지 계약된 부지임대료를 적용하여 감액해야 함에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아니하고 [표 4]와 같이 70,054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4] 가설사무실 조정 내역

(단위: 천 원/제경비 포함)

구 분	단 위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 량	사 업 비	수 량	사 업 비	수 량	사 업 비
계		-	146,951	-	76,897	-	△70,054
가설사무실	㎡	650	102,610	474	73,817	△176	△28,793
부지임대료	식	1	44,341	1	3,080	-	△41,261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독 소홀

가. 토공 운반 등 사업비 과다 계상

양구군(☑)는 공사중 선정된 토취장의 운반거리가 조정⁸⁷⁾되었음에도 운반거리를 조정하지 않았고,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르면 맨홀 실명판은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부속물이 아니며,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재 보관부지를 임대하지 않았고 공사현장 CCTV가 반영되어 있어 설계 반영이 불필요하고, 발주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한전주이설 비용을 도급액에 반영하여 감액해야 함에도 [표 5]와 같이 185,068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5] 토공 운반 등 조정 내역

(단위: 천 원/제경비 포함)

구 분	단위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계		-	298,848	-	113,780	-	△185,068
토공 운반(유용토)	m ³	5,948	201,355	4,896	113,780	△1,052	△87,575
맨홀 실명판제작·설치	개	159	20,432	-	-	△159	△20,432
관급자재 관리비	식	1	34,946	-	-	△1	△34,946
한전주이설	개	8	42,115	-	-	△8	△42,115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가설사무실 과다 계상

「건설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2-1 가설물의 한도) 편에 따르면 현장사무소 등의 한도는 공사규모(직접노무비)에 따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공사의 설계내역 상 가설사무실(사무소, 창고, 숙소)는 630m²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가설사무실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료를 설계내역에 반영하였다.

87) 유용토 운반거리 조정 : 5,948m³(20km) → 1,433m³(20km), 3,463m³(3.13km)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확인한 결과 가설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총 504㎡만 설치하고 126㎡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 계약된 부지임대료를 적용하여 감액해야 함에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아니하고 [표 6]과 같이 44,892천 원(제경비 포함)을 초과 계상하였다.

[표 6] 가설사무실 조정 내역

(단위: 천 원/제경비 포함)

구 분	단위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계		-	145,097	-	100,205	-	△44,892
가설사무실	㎡	630	100,041	504	80,405	△126	△19,636
부지임대료	식	1	45,056	1	19,800	-	△25,256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①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추진하면서 초과 계상된 토공 운반비 등 158,852천 원(제경비 포함), 차선도색 4,089천 원(제경비 포함), 가설사무실 등 70,05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추진하면서 초과 계상된 토공운반비 등 185,068천 원(제경비 포함), 가설사무실 등 44,892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관 련 자 ① 양구군 ㉓(전 ㉔) ----- ㉔

② 양구군 ㉑(전 ㉔) ----- ㉑

③ 양구군 ㉔ ----- ㉑

내 용

양구군(㉔)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단위: m³/일)

시설명	읍·면	개소	처리용량	비고
합 계		31	16,936	
공공하수처리시설	㉑ 등 0개 읍·면	7	14,50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⁸⁸⁾	㉒ 등 0개 읍·면	24	2,436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하수도법」 제15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등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88)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공공하수도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⁸⁹⁾(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토록 하였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7조의3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에 대해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고, 상수도급수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상수도가 신규 보급된 급수지역내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3년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는 [표 2]와 같이 상수도가 신규 보급된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표본조사⁹⁰⁾ 결과 2021년부터 2024. 3. 29. 감사일 현재 까지 총 37,72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89)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90) 상수도급수에 따른 수도요금 최초부과일을 기준으로 수도요금 30,000원 이상 부과 가구 표본조사

[표 2]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현황

(단위: 건, 천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미부과 건수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비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5	37,724	7,750	5,548	6,859	
	14	18,492	6,085	5,548	6,859	
	2	121	1	14	106	
	3	634	89	96	449	
	2	2,270	983	779	508	
	1	288	96	96	96	
	2	999	240	387	372	
	1	149	37	47	65	
	3	401	113	106	182	
	2	129	50	47	32	
	1	13,933	-	2,246	11,687	
	1	16	16	-	-	
	2	143	40	48	55	
	1	149	-	2	147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양구군 ㉓(전 ㉔) ----- ㉕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 까지 ㉖
에서 -----으로, ㉗(전 ㉘) ----- ㉙는 0000. 0. 00.부터 0000. 0. 00. 까
지 ㉚에서 -----으로, ㉛ ----- ㉜은 0000. 0. 00.부터 ----- 까지 --
-----으로 각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이에 상수도급수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상수도가 신
규 보급된 13개소의 급수지역내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른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은 35건 37,72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시고, 표본조사 외 상수도급수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상하수도 연결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①

관 련 자 ① 양구군 ① ----- 가

내 용

양구군(①)는 양구군 천연물질 소개 및 홍보, 전문인력 교육, 기업 천연물질 상담 등 지역산업 육성 거점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 ■■■■■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 ■■■■■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에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구상을 기초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 조성은 2022. 0. 00.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선정된 'A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양구군(㉠)에서는 -----면 -----리 000번지의 1필지의 지역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 □□□□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서를 2022. 0. 00. 작성하고 □□□□ □□□□를 건립 타당성, 시설기준 및 입주분석, 관계법령 검토 등을 위한 건축기획설계용역 등을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건축기획설계 용역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합계	18,998				
□□□□ □□□□ 건축기획설계용역	17,199	2023.00.00. ~ 2023.00.00.			
A 육성사업 지적측량	1,799	2023.0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023. 0. 0. 건축기획설계용역 완료 후 2023년 0월 □□□□ □□□□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협의를 추진 하던 중 [표 2]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표 2] 사업대상지 소유권 변동 현황

대상위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기일	소유자 (대표자)	변경일	소유자 (대표자)
	토지			2022.0.00.	
	건물			2022.0.00.	
	토지			-	-
	건물			2021.0. 0.	
	건물			2022.0.00.	
	건물			-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마을 주민의 오해 소지가 발생할 우려를 이유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제안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반대로 무산되자 대상부지 및 시설 매입 난항 등을 사유로 기 건축기획 설계(안)을 백지화하고 23. 00. 0. 인근 ----면 ----리 000번지를 사업대상지로 변경하여 ■■■■ ■■■■ ■■■■를 신축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조정을 요청한 후 [표 3]과 같이 건축기획설계 용역을 다시 추진하였다.

[표 3] 건축기획설계 용역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 ■■■■ 건축기획설계용역	13,662	2023.00.00. ~ 2023.00.00.	/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양구군(㉠)에서는 ----면 ----리 000번지 일원의 사업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최초 건축 기획설계용역 추진 전 이전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 전 소유권 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18,998천 원이 소요된 최초 건축기획설계(안) 등의 매물 및 재설계에 따른 착공지연 등 ■■■■ ■■■■의 원만한 건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양구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축기획설계용역 대가산정 부적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은 엔지니어링활동⁹¹⁾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91) 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에 따르면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 4(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획업무의 대가는 산출된 건축설계업무의 대가의 3%이상 8%이하의 범위에서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에 대한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건축기획업무 및 건축설계(계획·중간·실시설계)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발주해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은 □□□□ □□□□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설계용역대가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 4]와 같이 총 3,562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4] 건축기획설계용역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용역명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기준		증·△감	
	적용요율	용역비	적용요율	용역비	요율	용역비
합계		30,861		27,299		△3,562
□□□□ □□□□ 건축기획설계용역	5.47%	17,199	5.31%	15,189	△0.16%	△2,010
□□□□ □□□□ 건축기획설계용역	5.47%	13,662	5.31%	12,110	△0.16%	△1,552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 용역비는 산정 대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임

양구군(㉠)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 ㉠㉠㉠㉠ ㉠㉠㉠㉠ 건립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건립사업 지도·감독 업무 -----로서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른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사업 추진 시 과다 지급된 ㉠㉠㉠㉠ ㉠㉠㉠㉠ 건축기획설계용역비 총 3,562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획계획 수립,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추진 시 입지조건, 경제성·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강원특별자치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축공사 감독 소홀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 ㉡

내 용

양구군(㉠, ㉡)에서는 지역주민이 학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명품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스포츠 도시 랜드마크 조성 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건축공사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규모	계약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센터 건립	지1층/3층, 2,866㎡	4,591	2021.0.00.	2021.0.00. ~2024.0.00.	
양구 ㉡ 건립	3개동, 9,469.25㎡	18,256	2022.0.0.	2022.0.0. ~2024.00.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는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 A센터 건립공사' 를 추진하면서 시스템비계 임대료 42,654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양구군(㉡)에서는 ' 양구 B 건립공사' 를 추진하면서 가설울타리 32,346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75,000천 원(제경비 등 포함)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2024. 3. 2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A센터 건립공사 감독 소홀

양구군(㉠)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학습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A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스템 비계 임대료 59,764천 원(제경비 포함)이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었으나, [그림 1]과 같이 수직재(시공: SB-38, 미시공: SB-19/09/04), 수평재(시공: L-09, 미시공: L-06/03) 및 안전발판(시공: SB4018, 미시공: SB4009/4012/4015) 미시공 물량이 중복 설계 반영되어 [표 2]와 같이 42,654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림 1] 시스템 비계 설치(임대) 현황

시스템 비계 설치(임대) - 당초	시스템 비계 설치(임대) - 변경

[표 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제경비 포함)

공 종	품 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규격 (수량)	사업비	규격 (수량)	사업비	규격 (수량)	사업비
가설공사	합 계		59,764		17,110		△42,654
	시스템비계 임대료(외부)	시스템비계 (4,827㎡)	56,108	시스템비계 (4,827㎡)	17,110	시스템비계 (4,827㎡)	△38,998
	시스템비계 임대료(내부)	시스템비계 (631㎡)	3,656	시스템비계 (-㎡)	-	시스템비계 (4,827㎡)	△3,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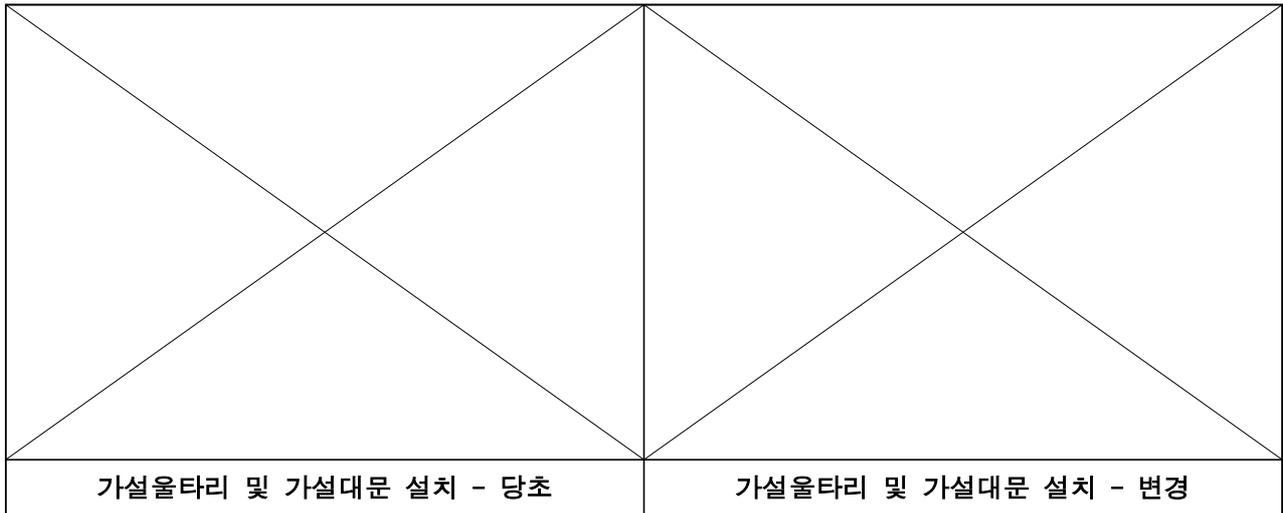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양구 ㉔ 건립공사 감독 소홀

양구군(㉔)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도시 랜드마크 조성 등을 위한 양구 ㉔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난 방지, 건설 현장 출입관리를 위한 조립식 가설울타리(E.G.I. h=2.4m), 조립식 가설대문(2개소, W=6.0m,

H=6.0m) 42,778천 원(제경비 포함)이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었으나, 인접된 부지는 양구 종합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어 시공이 불필요한 구간으로 [그림 2]와 같이 가설울타리와 가설대문이 미시공되어 [표 3]과 같이 32,346천 원(제경비 포함)을 초과 계상하였다.

[그림 2] 시스템 비계 설치(임대) 현황



[표 3] 가설울타리 및 가설대문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제경비 포함)

공 종	품 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규격 (수량)	사업비	규격 (수량)	사업비	규격 (수량)	사업비
가설공사	가설울타리	E.G.I. H=2.4m (789m)	42,778	E.G.I. H=2.4m (205m)	10,432	E.G.I. H=2.4m (△584m)	△32,346
	가설대문	W=6m, H=6m (2개소)		W=6m, H=6m (-)		W=6m, H=6m (△2개소)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시정] ① “**A**센터 건립공사” 를 추진하면서 과다 계상된 시스템비계 임대료 42,65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양구 **B** 건립공사” 를 추진하면서 과다 계상된 가설울타리 및 조립식 가설대문 32,346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강원특별자치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양구군

관 계 부 서 ㉔

관 련 자 ① 양구군 ㉔ ----- ㉔

② 양구군 ㉔(전 ㉔) ----- ㉔

내 용

양구군(㉔)에서는 양구군립■■■■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시설물 보안관리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를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 가로등 설치공사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비고
합계		34,816			
2023	■■■■ 가로등 공사	15,084	'23. 0. 0.~ '23. 0. 00.		
2023	■■■■ 가로등 설치 및 정원등 수선공사	19,732	'23. 00. 00. ~ '23. 00. 00.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전기공사 설계 부적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전력 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

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표 2]와 같이 2건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를 전기분야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용역 사업자에게 별도 발주하지 아니하고, 전기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업무담당자(-----, -----)가 전기공사를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가로등 설치공사 과다 산출 내역

(단위: m, 천 원)

구분	사업명	설치 주수	가로등 인입 거리			사업비		
			설계	시공	차이	계약	정산	차액
계		4	357	210	△147	34,816	29,000	△5,816
1	■■■■■ 가로등 공사	2	200	120	△80	15,084	12,176	△2,908
2	■■■■■ 가로등 설치 및 정원등 수선공사	2	157	90	△67	19,732	16,824	△2,908

※ 양구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업물량 산정 및 정산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

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현장 여건상 가로등 인입선로 거리가 [표 2]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시 각각 80m 및 67m를 설계내역서에 과다 계상하였고 공사 중 과다 반영된 인입선로가 불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당초 설계내역대로 준공 처리하여 5,816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출하였다.

3. 공사 감독 수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제5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㉔)에서는 2건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력기술업무와 관련 없는 담당자(-----, -----)를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양구군 ㉔ ----- ㉔는 0000. 0. 0.부터 -----까지 ㉔에서 ■■■■■ -----으로, ㉔(전 ㉔) ----- ㉔는 0000. 00. 0.부터 0000. 0. 00. 까지 ㉔에서 ■■■■■ -----로 각각 근무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업무를 자격이 없음에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사업 추진 시 현장여건에 맞춰 자재 및 시공 수량 등을 설계변경을 통해 5,816천 원(2건) 상당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변경없이 준공 및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른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현장여건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된 2건 5,816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된 전선수량 등 자재에 대해 자재단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